

의안번호	2212913
의 퇴 인	서영교 의원
회 답 일	2025.10.23.
추 계 번호	25G500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,
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.
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2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연장할 경우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는 2026년 1조 7,094억원, 2028년 667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3조 6,512억원(연평균 1조 2,17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시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7~2028년 총 574억원(연평균 287억원) 감소 예상
 -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시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~2028년 총 760억원(연평균 380억원) 감소 예상
 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시 부가가치세는 2026~2027년 총 3조 5,178억원(연평균 1조 7,589억원)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8조의3)	-	-287	-287	-574	-287
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2년 연장(안 제96조의3①)		-380	-380	-760	-380
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(안 제108조)	-17,094	-18,084	-	-35,178	-17,589
합계	-17,094	-18,751	-667	-36,512	-12,171

주: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,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3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	-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.12.31.에서 2027.12.31.까지 2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2	안 제96조의3제1항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	-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연장 (현행)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%(기준 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%)를 소득세·법인세에서 공제 (개정안) 2020년 1월 1일부터 <u>2027년 12월 31일까지</u>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%(기준 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%)를 소득세·법인세에서 공제	
3	안 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)	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 - 공제율: 현행 유지(재활용폐자원 3/103, 중고자동차 10/110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8조의3(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)	○	—
2	안 제96조의3제1항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)	○	—
3	안 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가.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- 개정안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2027년부터 발생
-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~2025년 감면실적의 평균이 향후 2년간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최근 2년('24~'25) 세액공제 실적은 연평균 287억 원

나.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부칙에 따라 2026년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
 -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7년 발생(징수기준)
- 정부 「조세지출예산서」의 실적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-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미반영

다.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은 각각의 '취득가액 × 공제율'로 산출되는 구조임
 -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 3/103, 중고자동차 10/110
- 세수효과는 최근 조세지출액을 바탕으로 추계하되,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재활용폐자원 분과 중고자동차 분을 구분하여 반영함

- 조세지출액(징수 기준)¹⁾은 재활용폐자원 분과 중고자동차 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, 세부 항목을 구분할 수 없음
 - 공제 대상인 취득가액(신고 기준)²⁾은 재활용폐자원 분과 중고자동차 분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, 이를 활용해 공제액을 추정하고 각 비율을 산출해 반영함
 -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한도³⁾가 적용되나 자료의 한계로 이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, 동 추계에서는 한도를 상회하는 신고분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
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각각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금액의 최근 증감률 추세를 반영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(1)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내국법인이 대·중소기업 및 농어업인과 상생협력을 위하여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에서 공제
- (개정연혁)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10.3.31. 제정된 규정으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
 - 2011.12.31. 일부개정: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
 - 2014. 1. 1. 일부개정: 출연금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,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을 제외
 - 2016.12.20. 일부개정: 출연금에 대한 공제율 10%로 상향, 농어업협력재단 출연금을 공제대상에 추가, 창업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시 취득가액의 3% 법인세 공제 및 사후관리규정을 신설
 - 2019.12.31. 일부개정: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의 출연금을 공제대상에 추가
 - (현행규정) 내국법인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

1)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

2) 국세청 제공자료 및 국세통계연보

3)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% -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가액

10%, 협력중소기업에 유형자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3%, 내국인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기업규모별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,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시설 등을 교육시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의 10%를 각각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

□ (감면실적) 「조세지출예산서」상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감면 실적은 2021년 213억 원, 2025년(잠정치) 280억 원으로 연평균 305억 원 수준

○ 동 규정은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의 실적에 따라 감면액 변동이 큰 편

[표 2]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감면실적: 법인세 및 소득세, 2021~2026년
(단위: 억 원, %)

	2021	2022	2023	2024	2025(잠정) ¹⁾	2026(전망)
법인세	212	329	408	294	279	285
소득세	0.8	0.5	0.5	0.2	0.7	0.7
합계	213	329	409	294	280	286

주: 1) 「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상 2025년 감면액은 2025년 상반기까지 신고한 조세감면액을 바탕으로 이전 연도의 진도비를 적용하여 추정한 숫자임

자료: 대한민국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(2) 추계방법 및 추계결과

□ (추계방법)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 2024~2025년 연평균(287억 원) 감면실적 수준이 향후 2년간 유지될 것으로 가정

- 2021~2023년까지 감면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2025년 잠정치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증감추세를 알 수 없음
- 다만, 2024~2026년(전망)치가 200억원 후반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최근 2년(2024~2025년) 감면액의 평균치를 활용

□ (추계결과)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 및 소득세수는 2027년 287억 원, 2028년 287억 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287억 원(연평균 574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
법인세 및 소득세, 2027~2028년

(단위: 억 원)

	2027	2028	누적	연평균
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(안 제8조의3)	-287	-287	-574	-287

나.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

□ (조세지출 실적)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은 2023년 1,006억원이었으며 2025년 380억원으로 전망

- 2020년 3월 시행(공제대상기간 2020년 1월초부터 6월말까지, 공제율 50%)
- 2021년 1월 공제대상기간 연장(2021년 6월말까지로 1년 연장)
- 2021년 3월 공제대상기간 연장(2021년 12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) 및 공제율 인상(50%→ 70%, 단,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인 경우 50%)
- 2021년 12월 공제대상기간 연장(2022년 12월말까지로 1년 연장)
- 2022년 12월 공제대상기간 연장(2023년 12월말까지로 1년 연장)
- 2023년 12월 공제대상기간 연장(2024년 12월말까지로 1년 연장)
- 2024년 12월 공제대상기간 연장(2025년 12월말까지로 1년 연장)

[표 4]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지출 실적

(단위: 억 원)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소득세	1,448	1,597	801	417	303
법인세	225	373	205	96	77
합계	1,672	1,970	1,006	513	380

주: 1. 2024년까지 실적치, 2025년 전망치

자료: 각 연도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추계방법) 향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조세지출 수준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

- 정부의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2025년 전망치는 2024년 기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수, 임대료 인하액을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에 신고된 중

합소득세 및 법인세 규모가 반영되어 있음

- 2025년 정부 전망치 및 소득세·법인세 구성비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

□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7년 380억 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760억원(연평균 38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- 2024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수, 임대료 인하액이 향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향후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추계결과는 변동 가능함

[표 5]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일몰연장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·법인세
(단위: 억원)

구분	2027	2028	누적	연평균
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일몰연장 (안 제96조의3①)	-380	-380	-760	-380
소득세	-303	-303	-606	-303
법인세	-77	-77	-154	-77

다.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

□ 최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조세지출액은 2022년 1조 4,409억원, 2024년 1조 5,370억원 수준

- 조세지출액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금액과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

[표 6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조세지출액: 2022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
조세지출액(E)	14,409	13,853	15,370

주: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의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

- 2022~2024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은 연평균 7.0% 감소하고,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은 연평균 7.4% 증가하는 추세

[표 7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(신고 기준): 2022~2024년
(단위: 억원, %)

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감률
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(a)	83,518	71,323	72,310	-7.0
중고자동차 취득가액(b)	123,188	124,045	141,963	7.4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 및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취득가액 자료를 바탕으로,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각각에 대한 최근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함

- 취득가액 기준으로 추정 시 2024년의 경우 전체 매입세액공제액 중에서 재활용폐자원의 공제액은 14.0%, 중고자동차의 공제액은 86.0%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
 - 항목별 공제액은 '취득가액 × 공제율'로 산출

[표 8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액 비율 추정(신고 기준): 2022~2024년
(단위: 억원, %)

		2022	2023	2024
재활용 폐자원	공제액 ($A=a \times \text{공제율 } 3/103$)	2,433	2,077	2,106
	전체 대비 비율 ($\alpha=A/(A+B)$)	17.8	15.6	14.0
중고 자동차	공제액 ($B=b \times \text{공제율 } 10/110$)	11,199	11,277	12,906
	전체 대비 비율 ($\beta=B/(A+B)$)	82.2	84.4	86.0

주: 취득가액은 신고(귀속) 기준 금액이며,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공제액은 징수 기준의 최종 조세지출액과는 차이가 있음
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항목별 공제액 비율(추정)을 반영 시, 2024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액은 재활용폐자원 2,156억원, 중고자동차 1조 3,214억원으로 추정
 - 항목별 조세지출액은 '전체 조세지출액 × 각 공제액 비율(추정치)'로 산출

[표 9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조세지출액 추정(항목별):
2022~2024년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
조세지출액(E)	14,409	13,853	15,370
- 재활용폐자원(E*α)	2,571	2,155	2,156
- 중고자동차(E*β)	11,838	11,698	13,214

-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,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6년 1조 7,094억원 등으로 추정
- 항목별로 2024년 조세지출 추정치에 최근의 취득가액 증감률을 반영해 조세지출 규모를 추정하고, 이를 합산함
 - 항목별 취득가액의 증감률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10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 시 조세지출액(추정):
2025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
재활용폐자원	2,006	1,867	1,737
중고자동차	14,185	15,228	16,347
합계	16,191	17,094	18,084

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2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 수는 2026년 1조 7,094억원 등 2026~2027년 2년간 총 3조 5,178억원(연평균 1조 7,58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6~2027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2조 6,278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8,900억원 감소 예상

[표 11]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
2026~2027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누적	연평균
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8조)	-17,094	-18,084	-35,178	-17,589
- 국세(74.7%)	-12,770	-13,509	-26,278	-13,139
- 지방소비세(25.3%)	-4,325	-4,575	-8,900	-4,450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장설희	백경엽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	김효경	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설희	02-6788-4836	shjang@assembly.go.kr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